

※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## 타행 자동이체 약관

2015. 4. 1 제정

2018. 1.31 개정

2019. 8.27 개정

2020. 4.24 개정

2022. 9.23 개정

**제1조(약관의 적용)** 타행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거래처”라 한다)와 IBK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**제2조(신청, 변경 및 해지)** ① 거래처가 타행 자동이체를 이용,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행 자동이체(신규, 변경, 해지)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② 타행 자동이체를 변경,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금일 전 제1영업일까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지시의 철회로 봅니다.

**제3조(타행 자동이체 방법)** 저축은행은 거래처의 타행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, 수표, 지급청구서 제출 등 별도 청구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인출하여 수취인 거래금융기관(이하 “입금은행”이라 한다)의 지정계좌(이하 “입금계좌”라 한다)로 입금합니다.

**제4조(입금가능 예금종목)** 입금계좌는 당좌, 가계당좌, 보통, 저축, 자유저축,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이어야 하며, 이 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거래처는 입금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**제5조(출금)** 저축은행은 거래처 출금계좌에서 지정일(거래처가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,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)에 출금합니다. 다만, 천재지변,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**제6조(거래불능 및 면책)**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이체금액과 이체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[미결제타점권(자기앞수표 포함)은 인출가능금액에서 제외] 및 기타 거래처의 귀책사유(수취계좌 부재, 잔액증명서 발급, 입금한도 초과, 법적 지급제한, 해약 등)로 출금 또는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거래처의 책임으로 합니다.

**제7조(출금우선순위)** 출금계좌에서 같은 날 여러 건(카드대금결제, 어음수표대금결제, 타 자동이체 등)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. 다만,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<개정 2020.4.24>

**제8조(입금 불능시의 처리)** 입금계좌 부재(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), 잔액증명서 발급, 입금한도 초과, 법적제한, 해지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.

**제9조(이용수수료)** 이용수수료는 건당 ( )원으로 하며, 이체금액 출금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.

**제10조(계좌이동서비스)** ① 타행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, 계좌이동서비스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. <신설 2019.8.27>

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,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 <신설 2019.8.27> <개정 2020.4.24>

③ 거래처가 영업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,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. <신설 2019.8.27> <개정 2020.4.24>

④ 거래처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. <신설 2019.8.27> <개정 2020.4.24>

**제11조(약관의 변경)**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. <개정 2022.9.23.>

② <삭제 2022.9.23.>

③ <삭제 2022.9.23.>

④ <삭제 2022.9.23.>

⑤ <삭제 2022.9.23.>

**제12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**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, 관련예금 약관을 준용합니다.